

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토지적성평가로 인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안구역 적성등급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용도지역 미지정지의 체계적 관리 도모(안 3-3-2. (4) 다 신설)

용도지역 미지정지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

나.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수수료 현실화(안 4-5. (3))

2013년 산정되어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는 검증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, 인건비

산정 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 
단가 중 건설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, 투입인원은  
“국토계획 표준품셈”을 적용하도록 함

다.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기관 역할 구체화(안 4-6. 신설)

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의 지자체 담당자 교육, 적성평가 사후관리를  
위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명시 및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 
마련

라.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(안 2-1-1., 2-3-3., 2-3-4. 등)

시행주체 명확화,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 
의견서를 2024.4.25.(목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도시정책과, 전화 044-201-4972  
/ 4843, 팩스 044-201-55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 
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 
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국토부  
도시정책과(☎ 044-201-4843, fax 044-201-5569)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